

장학금 지급 규정

1984. 7. 9 제정

2014. 3. 13 전문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국가기관, 교외재단, 장학금 기부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장학위원회의 구성)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장학위원회, 각 대학(원)장학위원회 및 특별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중앙장학위원회는 학생처장(위원장)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입학처장, 재무처장, 연구처장, 국제교류처장, 대외협력처장, 학생처부처장, 학생처 장학복지팀장(사무담당)으로 구성하며, 관련 업무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에서 주관한다.
2. 각 대학(원)장학위원회는 당해 대학(원)의 학(원)장, 교학부장, 학부(과)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당해 대학(원)의 학(원)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3. 특별장학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②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장학위원회의 직능) ① 중앙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예산 및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심의
2. 장학금 및 장학생 수의 대학별 배정
3. 장학금 지급기준, 수혜기간, 지급액 등의 심의·의결
4. 기탁장학금의 관리·운영
5.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각 대학(원)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및 장학생수의 학부·학과·전공별 배정
2.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

제5조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대별하며, 기탁기금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본다.

제6조(신청기간 및 방법) ① 장학금의 지급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별도 공고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당해 연도 2학기 수혜 장학금 : 6월
2. 다음년도 1학기 수혜 장학금 : 12월

② 장학금은 그 종류에 따라 본교 포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소속 대학(원) 또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.

③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대상) ① 장학금의 지급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하거나 총장 또는 중앙장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이화여자대학교 학칙」 제23조에 정한 수업년한 이내인 자

2. 해당학기 휴학, 자퇴 또는 제적이 아닌 자

3. 직전학기 평균평점 2.00 이상인 자(다만, 계절학기 및 특례 취득성적,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서 제외한다)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

2.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

③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④ 지도교수가 제3항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경제사정

2. 학업성적 및 품행

3. 연구실적

4. 신앙

제8조(선발 및 지급기준)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중앙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9조(장학금의 지급)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등록금 완납 이후에는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.

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다만,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④ 장학금은 1인 1종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중복 지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장학금의 환수)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휴학, 자퇴를 하거나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장학금을 취소하고,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. 다만, 장학금 받은 학생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해당학기 성적 취득 후 자퇴를 하는 경우

2.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경우
 3. 기타 중앙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- 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처장이 중앙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84. 7. 9 제정)

- ①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폐지한다.

부 칙(1998. 9. 21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4. 6 개정)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2. 14 개정)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7. 19 개정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2001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휴학한 자가 자퇴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중 휴학 또는 자퇴한 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고, 납입금 환불금액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환수하되, 장학금이 2학기 이상 보장된 장학생 또는 성적우수장학생이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고 복학시 이를 다시 지급한다.

부 칙(2004. 3. 11 개정)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2. 11 개정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9. 9 개정)

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2. 15 개정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7조제1항은 2012학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추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2. 2. 29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25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3. 13.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